

[] 매도 [] 교환 승낙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승낙면적(㎡)	비 고

1. 매도승낙
-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(지상 입목·죽과 시설물 포함)를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.
2. 교환승낙
- 가. 위의 토지(지상 입목·죽과 시설물 포함)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토지와 서로 교환할 것을 승낙함.
- 나. 교환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서로 교환하되, 다른 한쪽의 가격이 3/4 미만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가격이 1/2 미만)일 때는 교환하지 아니하며,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하도록 함.

년 월 일

승낙자 성 명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
주 소

귀하